

제43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상정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3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3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3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3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3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3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3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3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3

(10시17분 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잠깐 진행하고 제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및 사전투표일 기간 조정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니면 어떤……

○정춘생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정춘생 위원 정개혁위가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치개혁특위입니다. 정치개혁을 하고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게 뭘니까? 이게 정치개혁 법안입니까?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개혁 입법입니까? 이 부끄러운 안건을 정치개혁특위에 올려서 논의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2026년 지방선거 지금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안건을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안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정춘생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을 이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치개혁 입법입니까?

그리고 저는 회의를 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춘생 위원 이렇게 침대축구처럼 합의되는 것도 없고 진전되는 것도 없고 계속 시간만……

○소위원장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춘생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을 공개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땡땡하다면 국민께 땡땡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사진행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공개 부분은 이제까지 국회가 법안소위를 공개하지 않고 진행을 해 온 게 관례입니다. 국회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의사일정은……

○정춘생 위원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 요청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정춘생 위원님께서서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부족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거더라는 말씀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1)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9)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2)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5)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3)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2)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56)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2)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10시20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이상 총 12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비공개인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제부터 비공개입니다.

회의 모두발언과 안건 상정할 때까지는 공개를 해 왔던 게 관례였고요, 그래서 언론인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어떤 주장을 하는지, 외국인 투표에 대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공개할까요?

(「공개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건영 공개하시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아니, 마치 부끄러운 게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료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금 정돈……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으니까 공개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부끄럽지 않아요. 공개하세요.

○정춘생 위원 공개하십시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잠시만요.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원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에 관행적으로, 박덕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공개로 해 왔던 겁니다.

법안소위를 공개로 한 적은 없고 모두에 안건 상정 전까지 해 왔던 게 관례였는데 정춘생 위원님께서 오늘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따라서 공개를 할 건지 앞으로 남은 정개특위를 다 공개할 건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공개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정개특위 소위를 다 공개할 거냐까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님의 주장은 앞으로 다 공개하자라는 거잖아요.

○정춘생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소위가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했던 것은 위원들이…… 어차피 의사록은 다 공개됩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알려지지는 않는 건데.

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에 공개될 경우에는 법안 심사의 효율성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회의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공개가 꼭 필요하면 사전에, 회의 전에 미리 논의하고 참석하는 위원 입장에서 회의 준비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이런 경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 회의는 민주당에서, 교섭단체에서 요청한 법안이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정 교섭단체의 주장만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 거면 지난번에 저희가 발의한 법안도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춘생 위원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위가 의사록이 공개 안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서일준 간사님 의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법안소위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도 소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오늘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고 하니깐,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찬성한다면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를 하는 게……

김은혜 위원님, 말씀 꼭 하셔야 되면……

○김은혜 위원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법안 심사에 대한 양당 그리고 국회 내의, 입법부

차원에서의 토론과 논의 그리고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소위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오늘 의사진행발언뿐만 아니라 회의 모두가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개효과를 가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의 의견이 아닌 저희의 의사진행발언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걸 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민주당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입구에서 동료 위원들에 대한 격한 발언이나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일방공격이 없었던바 상호 균형을 위해서라도 동일 분량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언론에 공개하거나 아니면 정춘생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공개한 후 추후에 나머지 소위를 공개할지 여부를 함께 간사님 간에 협의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다른 의견 제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의견이 공개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공개하지 않는 게 온당하다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서 입장을 정하기가 조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안소위가 비공개로 되었던 전례에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물론 합의가 있었으면 공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언론인들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이유로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정춘생 위원 공개하면 올 겁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그래서 공개 부분에 대해 정춘생 위원님 제안 주셨으니 이것은 오늘 회의 끝나고 제가 서일준 간사님하고 따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개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현안 및 매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 입장을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10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건의 개정안의 내용들은 모두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취득 요건을 현행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에서 취득 후 경과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외 별도의 체류기간 요건을 추가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 또는 조약에 따라 선거권 부여에 관한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국가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강대식 의원안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취득일 기준을 보면 경과기간이 현행 3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이걸 5년 경과에서 7년 또는 10년까지 늘리는 안이 있고요. 또 별도 체류 요건을 추가하는 안이 있습니다. 취득 후 국내 체류 3년 경과 요건을 규정하거나 취득 후 지속적으로 거주기간이 5년이 경과하거나 김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5년을 경과하는데 4년 동안 730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호주의 관계에서도 호혜성 원칙만 규정하는 안이 있는 반면에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는 안으로 구별됩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선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영주자격을 취득한 18세 이상 외국인이 특정 국가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거주 주민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여 지방선거의 대표성과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요건 중 하나인 영주자격은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취업·투자·재산보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도 요건이 다소 엄격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외국인 영주권자 및 선거권자 관련 자료 및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국가 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7쪽,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정규정을 이번 선거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시행일 및 적용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선거법 15조 2항이 여야 합의로 지난 2005년 8월에 도입된 이래 2006년 0.02%인 6700명이었던 지방선거의 외국인 선거권자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2만 7600명, 전체 유권자의 0.29%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인구수 통보 내역에 따르면 올해 9회 지방선거에서는 잠정 한 15만 4500여 명 정도까지 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선거인 수가 적은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거주기간이나 체류 요건 등을 강화해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동네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국내에 정착해서 내국인처럼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실히 선거관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저도 어제 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2005년 8월부터 시행돼 가지고 지금 실제 외국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숫자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 사무차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늘어나는 추세의 가파름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방선거의 선거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결과가 심지어는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사실은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투표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거기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할 때만 와 가지고 투표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 보장을 다 해 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그보다 폐해가 많은 것을 더 우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쫓을 때 한국인 지역에 있는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안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한테 그 부분을 개방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격을 주고 또 자격의 조건 자체를 좀 엄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우선 이상식 위원님 하시고 정춘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저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참정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툼이 있어 왔고 투쟁이 있어 왔고 극단적인 투쟁의 역사도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세계는 다문화가 이제 대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추세라 생각을 하고요.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외교관으로 두 번 외국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외교관은 당연히 그 해당 나라에서 참정권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역지사지를 해 봤을 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그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저도 참여해 가지고 제 목소리를 개진하고 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이런 정책을 외국인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기회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든 그 나라의 중앙정치는 몰라도 지역 생활정치에는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호혜주의, 상호평등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외국에서 이런 입법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 같은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서 참정권을 부여한다 이것 썬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또 참여…… 제도가 도입될 때는 여야 합의로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일부 야당에서 이걸 자꾸 폐지하자 아니면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투표의 편향성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왕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 참정권의 확대 그다음에 다문화의 확대 이런 시대적인 추세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왕 실시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춘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차장님, 지금 현재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 나라가 총 45개 정도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사안마다 좀 다른데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정도입니다.

○정춘생 위원 어느 기사를 보니까, 45개 정도 된다는 기사를 저는 접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EU 같은 경우에는 EU 회원국끼리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는 외국인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오히려 있었던 나라들도 폐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우리도……

○임종득 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내가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정춘생 위원 아니, 추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남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도함으로써 K-민주주의를 확산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세금도 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본인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참정권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 있다고 봐서 저는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사무차장님,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도입할 때도 일본의 재일교포들 참정권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오랜 기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을 하고 있어서 선제적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것도 사실 전제는 상호주의, 우리가 하면 일본도 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참정권 부여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보면 중국, 타이완, 일본, 우즈베크, 베트남, 러시아, 기타 순서인데 여기 상위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 국가 중에 선거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허용되고 있는 데는 뒤의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민들이 러시아의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선관위 차원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에 우리 교민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해당 국가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선관위가 사실 헌법기관이라서 그걸 해야 될지 또 정부에서 해야 될지, 저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나.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면서 참정권을 같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우리 재외국민들은 그 나라에서 참정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주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의 법안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권을 주더라도 기본적인 정주기간이나 체류자격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무자격자한테 주지 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해당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원국가 쪽에서도 국내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 거주 외국인들이 국내의 선거에 관여하거나 해서 만약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반이 되게 되면 똑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 거주할 것 같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정이 있느냐 그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국외 선거운동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은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국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적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선거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자격을 좀 더 살펴자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참정권은 말 그대로 상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더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나라의 우리 교포들도 참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거에 관여하거나 또 선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 또 실질적으로 그 처벌조항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그런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든지 절차적인 또 제도적인 밑받침을 선관위에서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항은 현재 선거법에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임미애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실까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지 않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임미애 위원 지방선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영주권을 얻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도입될 때 그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투표권을 준 것만큼 해당 국가에서도 주면 바람직하기는 하나, 그리고 선관위에서 해당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반드시 원칙이고 기본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와서 국내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면 상호주의가 반드시 기본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과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라는, 기간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걸 굳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내지는 제한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원칙이 꼭 상호주의여야 된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저는 현행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은혜 위원님 이외에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김은혜 위원님, 서일준 간사님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강동완 차장님, 어쨌든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글로벌 흐름과 추세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맞습니다.

○김은혜 위원 스페인에서 우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11년에……

○김은혜 위원 정춘생 위원님, 듣고 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춘생 위원 여기 소위 잠깐 갔다……

○김은혜 위원 동료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법안이 어떤 건지 듣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스페인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기준은 뭐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거기도 일정한 요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 중단 없이 최소 5년간 스페

인 거주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5년의 체류기간 동안 출국기간의 총합 제한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현행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아니요, 스페인에서 우리 국민들 투표를 할 때 출국기간이 언제가 되면 관계없이 다 투표권을 부여하느냐 그것을 여쭙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 하더라도 5년의 체류기간 동안 스페인 출국기간의 총합이 10개월을 초과하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출국할 때 연속으로 스페인이 아닌 다른 국외 체류기간이 얼마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 기준을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한 번 출국할 때 스페인 바깥에 체류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즉 우리처럼 영주권을 부여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스페인의 사례가 이렇다 해서 우리가 이대로 우리 국민의 역차별과 불법 참정권을 확대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건데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뽑히면 안 된다는 그런 당위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투표권을 확보한 뒤에 외국에 나가서 1년, 2년이든 머물렀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지금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 취득하신 분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게 되면 외국인등록대장이 말소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은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이 아니고 2년 미만으로 해서 투표일 전에 들어오면 그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김은혜 위원 말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취득 후 해외에 체류해서 들어온들 우리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지, 실거주 의무를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국내 유권자도 마찬가지로 실거주 요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똑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국민을 여쭙본 게 아니고요 외국인을 물어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선거인명부상으로는 똑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선거인명부상 우리는 현재 체류기간과 그리고 실제 거주 외국인을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 부분을 보면 이 안에서 실거주가 확인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출입국 기록만 확인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기간을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안 돼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안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개정법률안처럼 하려면 그 시스템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김은혜 위원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송기헌 위원장님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외국인이 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권리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의 그런 협의로 치부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간사님.

○서일준 위원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참정권이 노무현 정부 때, 17대 국회에서 도입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0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논의 자체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는 됐고요.

○서일준 위원 논의는 됐고 도입된 거는 그렇게 된 거지요. 그때 도입된 이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세금 납부하니까 그래서 도입한다 그런 논리로 도입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일 외국인이 참정권을 받기 위해서 서로,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하면 재일 외국인 쪽도 참정권을 줄 거라고 기대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검토의견이나 중앙선관위 의견을 보면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세금 납부하니까 지방선거에는 참정권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또 K-민주주의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재일동포 60만 명 참정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 상호주의에 따라서 안 오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방금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정말 이 지방선거는 동물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가 한두 표, 10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 투표로 인해 가지고 그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다만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제도를 해 오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한 거는 지금 스페인밖에 없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있는 제도라도

의심을 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보면 원정 투표, 지방선거 기간에만 입국을 해 가지고 투표하고 돌아가더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최소한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말씀 긍정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확보하는 거와 동시에 전에 말씀드렸던 세금을 내시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차장님,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구에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차장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제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정교하게 하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적에 맞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원정 투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걸러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권 기회 주셔서.

배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논의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제가 잘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섬나라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외지향적으로 해서 상호교류를 중요시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런 열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FTA를 많이 하는 나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득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FTA와 상호교류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외국인의 투표권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식으로 해서 열었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그분들의 투표권을 가급적이면 많이 보장해 주는 게 인권주의적으로, 상호주의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주민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고 지방선거에 한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제대로 50% 넘기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국가의 재정 사업, 재정 지원을 받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이 2026년도에 한 730조 원 된다고 그러면 19세 이상 인구로 나누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4년으로 하면 한 육칠천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영주권만 취득했다는 이유로 살지도 않고, 물론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병역을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는 제대로 된 의무를 다 지는 것도 아닌데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만약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서 말씀

드린 지방 재정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어 갖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재고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참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살고 계시면서 지역화가 돼서 확실히 주민이라고 검증됐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인정하는 건 맞지만 단지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국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권리를 과연 줘야 되느냐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여야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한 가지 요구할 게 좀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차장님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있잖아요. 그 현황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어차피 지자체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자치단체별로 관련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모여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그 지자체별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관리되고 있을 것이고 그 영주권을 가지고 많이 모여 사는 지자체가 어디고 그거와 관련해서 영주권자가 얼마가 있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 주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일단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8회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안산시 단원구가 6167명이거든요, 외국인 선거권자가. 전체 선거권자의 2.3%입니다, 안산시 단원구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영등포구가 6307명, 전체 선거권자의 1.9%.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로구 6144명, 1.7%. 네 번째가 시흥시 5415명, 1.3%. 나머지는 전부 1%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봤는데 당선인은 영등포구 같은 외국인 선거권자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선자가 A선거구는 국민의힘, B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당선자가 혼재돼 있고 안산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당선자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 자료를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안코자 하는 게 있는데 마무리발언으로 혹시 허락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차장님, 원래 중앙선관위가 3대 선거, 대선·총선·지선 때마다 선거 전에

두 번, 선거 후에 한 번 정도 유권자 의식조사를 시행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번에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 리서치와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성별·연령·지역·학력·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거권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중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선관위가 실시하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통해서 국민 들께 외국인 선거권 제도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미 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나 행정 부담 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질문을 몇 개 추가해서, 앞으로도 이게 저희 가 논의할 수 있는 주요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은혜 위원 그래도 추진 계획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안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지 않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무차장님, 여기에 영주권자나 선거권자가 중국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중국 동포들을 뜻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도 기사만 봐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 국적은 표기가 안 됩니다. 외국인이라고만 표기되고 그분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는 전혀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언론을 보고 중국 국적자가 몇 퍼센트다 이런 걸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꺼냈는데요.

저희 지역에 외국인 영주권자하고 선거권자가 많습니다, 앞서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그분들의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다문화라고 불러 주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동포들이. 왜냐하면 한민족이다라고 해 주셔야 된다고 저한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와 선거권자의 개념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족 같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견을 확인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사전투표일 기간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박수민 의원님과 조승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자료 2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 사전투표기간 변경 또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조승환 의원님 안은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인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박수민 의원님 안은 사전투표제도 대신 과거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기간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4~5일의 시차가 있는 유권자의 의사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전투표기간 이후에 단일화 등으로 인한 후보사퇴 시 사표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승환 의원님 안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여 사전투표와 선거일 간의 간극을 축소함으로써 유권자의 민의가 왜곡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간의 간극 축소로 인해 투표마감시각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하는 관외사전투표지 등기배송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선거 일자별 회송용봉투 접수 현황을 보면 선거일 3일 전까지 95% 이상의 관외사전투표용지가 접수가 되지만 선거일 2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회송된 투표용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투표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는 옆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박수민 의원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된 부재자투표제도로 대체하여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 편의성이 제고되어 투표율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사람이 그 사유와 인적사항, 주소와 거소를 기입하여 선거인명부확정 이전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거편의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6쪽입니다.

조승환 의원님 안의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관내·관외사전투표를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해서 관내사전투표를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선거인이 하는 투표로 하고 그 이외 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투표를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및 봉투 교부와 관련해서도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

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고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관내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에 기표하도록 하고요.

투표함 투입 방식 역시 관외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하되 관내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 없이 관내사전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마감 후 이송과 관련해서도 관외사전투표는 현행과 같이 우체국에 인계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현황 관리와 관련해서 선거인별 사전투표 일시 및 사전투표소명이 포함된 사전투표자 현황을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매일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내·관외사전투표의 투표 및 이송 방식을 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과 현실을 일치시킬 수 있고 사전투표기간 투표자 현황의 집계·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사전투표와 선거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관외선거인 투표용지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 등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서 사전투표록에 기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통합선거인명부에도 투표 완료 선거인의 사전투표일 및 사전투표소명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관내사전투표를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경우에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의 투표지가 하나의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되어 개표 혼선 및 시간 지연의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4쪽,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조승환 의원님 안은 두고 있고 부재자투표 도입 관련 개정규정 역시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먼저 현행 선거법 148조 1항에서 사전투표소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관외사전투표의 우편배송 가능 기간 그리고 유권자의 알권리 최소침해 기간 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사료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10월 23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나 부재자투표 시기와 관련하여 박수민 의원안처럼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한다면 그 기간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소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출근한 김에

투표하는 전례가 있다가 휴일에 투표하게 돼서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조승환 의원님 안의 경우처럼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더 줄인다면 중도 사퇴자나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선택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는 관외사전투표용지 등기배송이 과연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대선만 하더라도 선거일 전 2일에 접수된 것이 전체의 4%인 16만 9000통을 넘고 있고 배달 도착시간도 18시를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술적으로 사전투표일을 2일 앞당길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에 많은 물량이 도착하고 투표마감시각까지도 도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중한 투표가 기권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까지 4일 동안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우편투표 접수라든지 선거일 투표 준비 그리고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관리 그리고 개표 준비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선거관리 업무를 정신없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투표기간 변경 또는 조정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선거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편 박수민 의원안은 사전투표제도를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도로 대체하자는 내용인데요. 우리 위원회로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유권자들이 사전에 부재자투표를 신고해야 함에 따라서 유권자의 편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46쪽, 관내·관외사전투표 구분 및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에 운영되는 절차와 방식을 법률로 명확하게 하자는 조승환 의원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사안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전투표의 구분과 관련해서 현재 규칙 86조 3항에 있는 관내와 관외 구분을 법률로 갖고 오는 경우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현재 규칙 133조 3항에 관내와 관외 구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단위로 관내·관외를 구분한다는 것 또 세종과 제주는 광역의원선거구 단위로 구분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법률에 추가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둘째 투표용지 및 봉투 교부, 셋째 투표함 투입 방식, 넷째 투표마감 후 이송 관련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다섯째, 사전투표자별로 일시 등을 관내·관외로 구분해서 현황 관리하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열악한 사전투표소 여건 그리고 엄청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재도 사전투표 사무가 과도하다 보니까 지금 선거사무 종사를 기피하고 있고 또 현재 규칙 서식에 따라서 사전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서 사전투표 완료한 선거인의 사전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출력되는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도 사전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기재되어 지금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현황을 별도로 출력해서 관리하고자 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첫째는 통합명부 시스템 기능 개선이 전면적으로 필요하고 투표용지 발급기와 연계 테스트 또 별도 출력 프로그램 개발 등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투표를 마친 사전투표자 전체 명단에 대해서 참관인 등 제삼자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고요. 사전투표자명단 출력할 때는 투표소당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은 한 사전투표소에 최장 160m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책을 만드는 형태로 재가공되지 않는 사전투표자명단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의문이고요.

사전투표마감 후에 각 사전투표소에서 명단 출력시간 때문에 사전투표소의 투표 마감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체국이나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인계하는, 연쇄적으로 업무 지연이 지금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안정적 사전투표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자료와 홍보물에 사전투표 일자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라고 이미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법화되어 개정이 된다면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이상으로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제가 차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좀 하고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수민 의원안이 부재자투표가 나와 있고 또 저희 당에서 제시한 것은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많이 거치고 그 부분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선거협회까지, 당시에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님이 지원해 주셔서 선거협회까지 넣는 개정안을 준비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협회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빠르다라는 입장을 제기해서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이게 저는 사실 선관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었던 안이라고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가 다들 비슷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는 기본적으로 본투표를 미리 당겨서 하는 투표고 관외사전투표는 우편투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법으로 당기자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 지역구로 부산광역시 중구하고 영도구가 있습니다. 제 주소지가 영도

구입입니다. 그런데 중구 가서 투표를 하면 관외사전투표가 됩니다.

지금 관외사전투표하고 관내사전투표하고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우편요금이 한 통당 천몇……

○조승환 위원 한 1700원인가 18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다면 비용 문제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자기 투표가 관외의 투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영도구 사는데 중구 나간 김에 중구에서 투표를 한다는 그 편의보다는 들어와서 내 투표를, 사전에 하더라도 관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편을 통해서 간다라는 건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위험성을 투표하는 사람이 스스로 리스크를 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흘…… 그러니까 3일부터 2일 동안, 그래서 제가 이틀을 당기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선관위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사실 D-1일에 오는 것이 결국 선거일에 로스트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D-2일까지는 선거일에 오는 거고 D-1에 오는 것은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투표인이,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투표인이 행정적으로 이것까지 감안해서 하기에……

사실 선거 다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까마는 14일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5일 전부터 각종 규제를, 선거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받게 되고 의사결정 자체가 5일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 사전투표가…… 더군다나 요즘 투표율이 30% 이상 가고 있는, 거의 절반이 투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둘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사흘을 당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표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 서버에 사전투표자가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을 한 것인데 결국은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사전투표 이 부분들에서 말썽이 많이 나오니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본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인 명부에 가서 자기 명부에 확인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전에 주소지를 가지고 투표소를 정해 주니까 결정이 가능한데 사전투표 이것은 사실 내가 어느 투표소에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투표인 명부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후 투표, 사후에 거기서 내가 투표를 했더라는 걸 남기자.

그런데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투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투표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해라.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하러 가면 신분증 주지 않습니까? 신분증 줄 때 그걸 한 번 중첩적으로 카피를 찍 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어느 투표소에서 누가 투표를 했더라는 게 서버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전자투표 얘기하셨을 때 실물검증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물검증, 그리고 일반인들에 이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하도 시끄럽고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을 때 선관위 입장에서 이것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투표했다라고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방식을 선관위에 맡겨 놓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각 시도 선관위에서는 출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의 영도구의 사전투표다 그런다면 사전투표 하고 난 뒤에 시 선관위에서 그 명단을 출력을 해서 이쪽에 각 사전투표소 갖고 와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딱 찍어 놓는다든지 거기에 투표소하고 확인해 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그런 절차를 하면 행정적인 부담도 사실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종의 사후투표인 명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관위의 행정적 부담이나 또 우리 사전투표제의 공간을 전혀 흔들지 않으면서, 일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신도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입법을 발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방법이 그 취지를 넘어서는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 때문에 당초 취지에 안 맞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장 날인 관련한 것도 법에는 그렇게 취지가 돼 있지만 실행할 때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전투표 한 다음에 한 며칠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면 벌써 다 투표를 했다고 이러면서 ‘당신한테 투표했다 힘내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사전투표 하고 본투표 사이에 며칠이 비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정치적인 사안이라든지 표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일 날 그 사람을 뽑는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꼭 본투표에 그 사람을 뽑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일관성을 해치는 거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 당일 날은 선거운동 못 하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사전투표 날은 우리가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소 주변 100m 밖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할 수 있지요? 투표일인데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똑같은 투표행위인데 어떤 날은 선거운동을 해도 되고 어떤 날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것은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법적인 문제다? 아니, 우리가 입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런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게 오로지 우편이 오가는 데 며칠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난리를 피우고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표심도 바뀌고 선거운동도 막 뒤섞여서 하게 되고.

그리고 먼저 투표한 사람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투표했으니까 너는 누구한테 투표하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표심이 제대로 동일하게, 연속성 있게, 균일하게 원칙에 따라서 하는 개인의 참정권이라든지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날인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전투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다라고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 방법은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입법기관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선관위가 이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미리 선언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찾아내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취지를 방법상의 어려운 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사전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정치적 상황이고 투표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단일화 같은 이런 드라마가 연출되려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사전투표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를 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본인의 확고한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평가에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본투표일에는 못 한다 이러면 이것 바꾸면 됩니다. 저도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투표 마감이 만약에 오후 6시면 6시까지든 어떤 식으로든지 독려도 하고 또 뭐 하면서 투표 독려하고 또 선거운동하고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 좀 투표해라’는 말하고, 가서 ‘너 투표하되 다른 사람을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투표일에 투표를 못 하는 것이 입법적 미비라면 국회에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법안을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장님, 사전투표 실시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연계 관계를……

○이상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제도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것은 확실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상식 위원 이제까지 어느 정부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투표율을 올리려고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또 공익광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 사전투표제도가 참정권 보장, 투표율 제고에 확실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령 부재자투표제도 이런 것은 공급자의 측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권자인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부재자 신고를 해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다시 돌아간다면 그럴 겁니다.

○이상식 위원 그래서 국민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또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라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사전투표제도라는 것이 확실히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또는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도 법의 정신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또 행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입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투표율 제고 또 국민 편익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다 부수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견해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서일준 간사님하고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세요? 김승수 위원님 하고 마지막으로 송재봉 위원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투표가 참정권을 확대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사전 날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칙으로 지금 인쇄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총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이걸 법을 바꿔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본투표는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하는데 사전투표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들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투표소가 확대된다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투표소가 확대된다면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서일준 위원 그러나 많은 인력이라든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밀집지역은, 차장님 말씀 100%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골 면 지역 같은 데, 사전투표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관내가 대부분인 그런 투표 지역은 이번 선거 때 시범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각 시도별로 시범을 해서, 샘플을 해서 거기 지역은 날인을 해 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선관위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3571곳입니다마는 어느 곳에…… 대선 때 적게 왔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적게 온다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니, 그간의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사전투표 한 10년 전에 도입이 됐으니까. 10년 동안 가령 예를 들면 전북의 시골 면에 다른 외지 분들이 많이 거주를 안 하니까 사전투표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면 소재지에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날인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운지. 그래서 어려운 데는 말씀처럼 인쇄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데는 날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가능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깊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자 수 적은 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사전투표 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몇 명이 했다. 시골 면 지역에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전투표소 한 곳도 있거든요. 거기에 1000명도 거주를 안 하고 유동인구도 거의 없으면 사전투표 인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게 인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투표관리관이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날인을 해도 충분히 선관위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시스템상 특정 사전투표소만 인쇄 날인이 안 되고……

○서일준 위원 아니, 인쇄하고 거기에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인쇄 나오지만 다시 투표관리관이 찍으면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승수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송재봉 위원님.

○김승수 위원 서일준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사전투표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소별로 인원이 거의 일정할 겁니다, 매번 사전투표 하는 인원들이. 조금 사전투표율 증가율도 이제 거의 최대치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저번 회의 때도 날인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과 비용 문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전투표소에 다 그 인력과 비용을 이렇게 늘리면 그만큼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잘만 시뮬레이션 해 보면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날인해도 가능한 지역 또 여기는 인력이 추가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면 서일준 위원님 말씀처럼 몇 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들, 좀 이렇게 안 된다는 단정하에 아예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 대선 때 저도 사전투표를 제 관내에 하러 갔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모니터상의 제 선거인관리명부에 그걸 못 찾아 가지고 한 10분 정도, 1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 6분 정도 소요가 됐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신분증 인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요, 신분증은 내 거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니, 신분증이 인식 안 될 경우에는 수기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승수 위원 신분증은 인식이 됐는데 모니터상의 선거인명부상에 내 이름을 못 찾아 가지고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 인식이 안 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보면서 직접 입력을 해서 명부를 찾아내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분증이 제대로 인식이 됐는데 이름이 안 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요.

○김승수 위원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일일이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단순한 선거관리위원의 업무 숙지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사전투표 문제가, 물론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사전투표가 도입됐다는 것,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도 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전투표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투표 의향, 그러니까 투표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미 기투표한 사람은 지금 내가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본투표와 간격을 최대한 붙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투표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며칠간 사이를 뒀을 때와 본투표일하고 딱 붙였을 때 혹시나 인력이라든지 선거관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유리하거나 좋은 점이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참정권은 참정권대로 높이면서도 지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김승수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조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우편물이 선거 당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100% 선거 당일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4%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표권 자체가 기권 처리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도 좋지만 또 신뢰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 더 찾아내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유권자의 투표구로 해서 개표구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앞서 사무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개표소로 전달 방식을 아예 달리해 가지고 그 시기를 줄이면서도 안정성은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면 밀고 갈 수 있는데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사전투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가지라도, 일시적으로 다 고치고 보완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보완되는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을 선관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 개정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선거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우리 사전투표제도가 국민의 참정권이라든가 투표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앞서가는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송재봉 위원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만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외국에서 오시는 선거 관계자분들이 다들 그 부분을 깜짝 놀라서 가십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사전에 날인을 하자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은 사실은 인쇄 날인하는 게 더 정확하게 투표용지가 교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직접 날인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전에도 제가, 오늘 법안에 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전투표가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실 현재도 투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지역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7만이에요, 읍 지역인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줄을 서 있다가 투표소 안에 사람이 거의 못 들어가서 막 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현재 처해 있는데 날인하고 있으면 투표하러 왔던 분들의 상당수가 기다리다가 투표를 못 하고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게 우려됩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투표를 방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저는 이것도 의문인데 왜 사전투표는 오후 6시까지만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본투표도 6시까지만 합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송재봉 위원** 8시까지 하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건 재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인데……

○**송재봉 위원** 재보궐선거만 그런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송재봉 위원** 저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한 8시까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규 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을 오히려 좀 늘려 줘야 참정권이 확대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투표 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또 토요일도 지금 사전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시간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늘리게 되면 관리적 측면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서너 시부터 나와서 하십니다, 정리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송재봉 위원** 끝나는 시간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시작 시간이 같기 때문이에요.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6시까지 하지 말고 한 8시까지 이렇게 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과거에 부재자 투표는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그게 6시까지로 늘린 겁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편의하게 하고 소외되지 않게 하고 실제 자신의 업무라든가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더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관위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송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안건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의 차이가 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일단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오늘 합의된 안건이 2건밖에 없어서요. 논의를 종료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는 계속 심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문수 김승수 김은혜 김재섭 김한규 박덕흠 배준영 서일준 송재봉 윤건영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임종득 정춘생 조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법제국장 박세진